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⦁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 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사택의 취득비용 ⦁사내복지근로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우리 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지원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(단,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 ⦁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 보증금 및 임대료 ⦁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 시설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⦁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 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 ⦁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 ⦁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